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  |         |
|---|---------|
| 선 | 기 관 의 장 |
| 람 |         |

공  보

제774호 2013년 5월 28일(화)

## 고 시

○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..... 2

|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란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##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

구제역 방역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.

2013년 5월 28일

### 속 초 시 장

1. 목 적 : 구제역 예방
2. 지 역 : 속초시 전체
3. 대상가축 : 속초시 관내 소(한·육우, 젖소) 및 돼지, 염소, 양, 사슴
4.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제역
5. 실시기간 : 2013. 5. 29 ~ 접종 완료시까지
6. 기타사항
  - 가축의 이동은 예방접종이 완료된 개체에 한하여 허용
  - 백신접종에 의한 유·사산 축에 대한 보상 없음
  - 접종당일 축주 농장 내 대기 및 가축보정 등 검사에 적극 협조
  -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  - 문의사항 : 속초시농업기술센터 (☎ 639-2583)